

게임개발자연대 정관



2014년 8월 22일 개정판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법인은 “게임개발자연대(Game Developers Guild of Korea)”라고 한다.

제 2조 (목적)

게임개발자연대는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1. 게임 산업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2.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3. 게임 문화 개선
4. 게임 관련 연구 지원

제 3조 (사업)

게임개발자연대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게임 산업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조사하고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2. 게임 산업 종사자와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사업
3. 게임 산업 종사자와 게임 관련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4. 3항의 개선을 위한 제안과 추진 사업
5.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의 연대 사업
6. 기타 제 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회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게임개발자연대의 회원은 다음 중 하나의 항에 해당하는 자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개인 또는 단체이다.

1. 게임 개발 회사에 종사하는 개인
2. 게임 유통 회사에 종사하는 개인
3. 이상 외 게임 관련 회사에 종사하는 개인
4. 게임개발자연대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 5조 (회원의 구분)

게임개발자연대의 회원은 다음의 각항에 따라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2. 준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을 말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게임개발자연대가 운영 또는 지원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준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회복할 때 까지 총회에서 의결권과 피선출권을 가질 수 없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게임개발자연대의 정관 및 내규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8조 (회원 징계 및 자격 정지)

회원이 게임개발자연대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제 7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재적 과반수의 동의로써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제명할 경우 사유의 경중에 따라 기간을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의 탈퇴)

게임개발자연대의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제 8조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준하는 재가입 거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 및 운영

제 1 절 총회

제 10조 (총회)

총회는 게임개발자연대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 11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2회 매년 3월과 11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 외의 기간에 대표, 감사 혹은 이사 2인의 소집 요구, 또는 등록 정회원의 30%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시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 개최를 소집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이메일과 공시로 전체 회원에게 안건을 통지해야 한다.

제 12조 (총회의 안건)

총회는 다음 안건을 처리한다.

1. 사업 보고 및 결산안 승인
2.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3. 정관 개정
4. 대표 선출
5. 이사 및 감사 선출
6. 기타 중요한 결정 사항

제 13조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 사항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 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제 2 절 임원

제 14조 (대표)

1. 게임개발자연대의 대표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대표는 총회에서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3.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 전원의 동의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대표는 연임할 수 없으나 중임할 수 있다.
5. 대표는 상근이며 상근 겸직이 불가능하다.
6. 대표는 이사회 과반 이상의 승인에 의해 정해진 보수를 받는다.

제 15조 (부대표)

1. 게임개발자연대의 부대표는 선출된 대표가 정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2. 부대표는 이사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 16조 (이사)

1. 게임개발자연대의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3명으로 한다.~~ [삭제: 2014년 8월 22일 임시 총회]
3.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다.
4. 이사는 겸직 가능하다.
5. 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 소집 시 참석해야 하며, 유무선 화상 또는 음성으로 참석할 수 있다.
6. 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5항의 방법으로도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 위임할 수 있다.

제 17조 (감사)

1. 게임개발자연대의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1명으로 한다.
3. 감사는 게임개발자연대의 사업과 회계, 운영 등을 감사한다.
4.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감사는 겸직 가능하다.
7.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면 즉시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 18조 (고문)

1. 고문은 대표 또는 이사가 추천하고 이사회 과반 이상의 승인으로 위촉한다.
2. 고문은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고문은 대표가 이사회 과반 이상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 19조 (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대표, 부대표, 이사, 감사) 입후보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는 해당자의 입후보를 거절할 수 있다.

1. 대표와 민법에서 규정한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자
2. 관련기관에서 비위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자

제 20조 (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구성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75% 이상의 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제 2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을 조장한 행위
3.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4. 제 3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제 19조에 해당함이 밝혀진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 21조 (대표 직무 대행)

1.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2. 1항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직무대행자를 결정한다.
3. 대표가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사회는 즉시 총회를 소집하고 대표 선출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대표 직무 대행은 상근 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3 절 이사회

제 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 부대표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 23조 (이사회의 소집)

1. 정기이사회는 매년 10월, 임시이사회는 이 외의 기간에 대표, 감사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소집이 결정되면 전원에게 안건을 서면 또는 이메일로 알리고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이사회는 2항에 예고한 안건 외 건의 의결을 위해서 전원 동의해야 한다.
4. 이사회는 소집 및 의결 내용은 문서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 보존한다.

제 24조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는 이사회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안건 의결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서면에는 이메일을 포함한다.

제 4절 집행부와 위원회

제 25조 (집행부의 임명)

1. 집행부는 게임개발자연대의 대표가 임명한다.
2. 집행부는 상근과 비상근을 둘 수 있다.
3. 보수를 지급해야할 경우, 이사회 과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조 (집행부의 업무 영역)

집행부는 대표의 필요에 따라서 업무를 지정받으며, 활동 내용은 이사회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제 27조 (집행부의 근로 조건)

1. 비상근 집행부는 별도의 해임 절차를 갖지 않고 대표가 해임할 수 있다.
2. 상근 집행부는 노동 관계법에 정하는 근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 28조 (위원회)

대표는 필요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 29조 (회계년도)

게임개발자연대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0조 (예산 및 결산)

1. 대표 혹은 집행부는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대표 혹은 집행부는 매년 2월 20일까지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 3월 정기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매년 이상의 서류를 감독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 31조 (수입)

게임개발자연대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외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32조 (비용 공시)

게임개발자연대의 모든 수입금과 지출금은 게임개발자연대 공식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 5 장 연대의 해산 [신설: 2014년 8월 22일 임시 총회]

제 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부칙

제 1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2조 (효력 발생)

이 정관은 2013년 10월 29일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게임개발자연대 발기인의 목록은 별지에 첨부한다.

2014. 8. 22

대표이사 김종득 (인)

이사 김동은 (인)

이사 오영욱 (인)

이사 황상훈 (인)